2021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5H 서울주택도시공사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다가구, 원룸형 임대주택으로 아래와 같이 신규 및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신규세대 입주자모집은 신규 준공(매입)된 주택의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모집공고 입니다.
- **잔여세대(재공급)** 입주자모집은 기존 주택에서의 미입주, 입주 중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실을 재공급하기 위한 모집공고입니다.
- 금회에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중 **신규공급 대상주택은 '전세형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주택으로서 **월임대료의 최대 8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월임대료를 최소 20%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 **공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순위 요건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 기한 내 서류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1.06.30.(수)로 이는 **입주자격 및 순위요건의 판단기준일**이 되며,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하므로 중복 신청 시에는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최초 입력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안내문을 전송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하기 바라며, 연락처 오기나 변경 등의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사에서 별도의 대출을 시행하지 않고, 일부 주택의 경우 금융권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개요

▶ 공급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인터넷 신청접수	서류제출	입주자격 검증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입주기간
2021. 06.30.(수)	2021. 07.19.(월) ~ 07.23.(금)	2021. 07.29.(목) ~ 08.04.(수)	~ 2021. 10월 중	2021. 11.03.(수)	2021. 11.22.(월) ~ 11.26.(금)	2021. 12.13.(월) ~ 2022 02.11.(금)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주택공개 시간: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 인터넷 신청접수: 2021.07.19.(월) 10:00 ~ 07.23.(금) 17:00
-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021.07.28.(수) 예정
- ※ 서류제출: 서류심사대상자에 한정, 등기우편 제출
- ※ 소득, 자산, 자동차, 주택소유 소명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 예정

▶ 공급대상 주택

■ 신규공급 : 138호

자치구	주소지	주택형	전용 면적	공급 호수	주택 구조	승강기 설치여부	성별
	계			138			
71	강동구 천중로48길 9-13	23B	23m²	1	개방형 원룸	미설치	-
강동구	(강동서영스윗홈)	35A	35m²	11	분리형 원룸	미설치	-
	구로구 오리로13길 50	29B	29m²	10	개방형 원룸	설치	-
구로구	(대정이오스)	43A	43m²	6	분리형 원룸	설치	-
	금천구 범안로12길 50, 제1동		30m²	32	오피스텔 (분리형 원룸)	설치 *기계식 주차장	-
금천구	금천구 범안로12길 50, 제2동		30m²	31	오피스텔 (분리형 원룸)	설치 *기계식 주차장	-
	금천구 독산로20길 13 (아임빌7차)		28m²	6	개방형 원룸	설치	-
도봉구	도봉구 도당로9길 15-3 (씨앤제이빌)		29m²	10	투룸	설치	-
	서초구 주흥6길 33	29B	29m²	6	개방형 원룸	미설치	-
u+¬	(반포삼이하우스)	34A	34m²	6	분리형 원룸	미설치	-
서초구	서초구 효령로46길 32-5	29B	29m²	17	개방형 원룸	설치	-
	(동우빌라트서초)	35A	35m²	2	분리형 원룸	설치	-

■ 재공급 : 41호

자치구	주소지 주택형		전용 면적	공급 호수	주택 구조	승강기 설치여부	성별
	계			41			
강남구	강남구 개포로24길 13 (백년빌)	}	26m²	1	개방형 원룸	미설치	_
강북구	강북구 삼양로131길 6 (수유동 569-17)	8	20m²	1	분리형 원룸	미설치	_
21717	광진구 뚝섬로49길 6C (자양에스하임4))	29m²	2	개방형 원룸	미설치	_
광진구	광진구 아차산로46가길 1 (자양에스하임11)	0-3	30m²	2	분리형 원룸	미설치	여성
	금천구 독산로33길 32, B (시흥동 849-32)	단지	30m²	1	개방형 원룸	미설치	남성
금천구	금천구 독산로96길 27-6, B동	40C	40m²	3	투룸	미설치	여성
	(휴먼에코빌4차)	29A	29m²	1	분리형 원룸	미설치	여성
	동대문구 경동시장로9가길 (제기홈)	21	24m²	1	개방형 원룸	미설치	남성
동대문구	동대문구 답십리로65길 114 (삼화에코빌2차)	, A동	35m²	1	투룸	미설치	남성
	마포구 성미산로 21 (진흥하임시티)		23m²	1	개방형 원룸	설치	-
마포구	마포구 포은로 91 (대명파크뷰)		23m²	2	개방형 원룸	미설치	-
	서대문구 증가로12가길 (주영테크빌)	68	18m²	5	개방형 원룸	미설치	여성
	서대문구 증가로24가길 (다움파크빌)	11	18m²	3	개방형 원룸	미설치	_
174000	서대문구 증가로8길 68- (홍은동 411-5)	24	16m²	1	개방형 원룸	미설치	-
서대문구	서대문구 증가로8길 76· (르비앙휴)	-6	15m²	1	개방형 원룸	미설치	-
	서대문구 포방터2다길 (르비앙휴)	7	20m²	3	개방형 원룸	미설치	_
	서대문구 홍은중앙로8길 9 (현인그린빌)		17m²	4	개방형 원룸	미설치	_
서초구	서초구 논현로5길 24-1 (백년빌)	0	26m²	5	개방형 원룸	미설치	_
서ㅂㄱ	성북구 서경로13길 33 (드림빌2차)	}	15m²	2	개방형 원룸	미설치	_
성 북구 	성북구 솔샘로6가길 42 (광진홈)	2	18m²	1	개방형 원룸	미설치	-

- 개별주택의 호실구조 및 건물전경 등은 [첨부]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재공급 대상 주택은 도면 미제공)
- 호실 별 면적,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은 [첨부]주택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균 전용면적(m)은 해당 건물의 공급대상 호실 평균이며, 호실 별 전용면적은 상이합니다.
- 승강기 및 기계식주차장이 운용되는 주택의 경우 위탁관리 등에 의한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금액은 주택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설치주택 : 2~5만원, 기계식주차장 설치주택 : 10~15만원 예상)

- 신규공급 대상주택의 경우 전세형으로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재공급 대상주택의 경우 일반형으로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신규 및 재공급 대상주택 모두 보증금의 최대 60%까지 임대료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공급대상 주택의 가구, 전자제품 등 비품과 부대시설은 주택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 중 일부 주택에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실 공간이 존재하여 공동체 활동 운영 등 자치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공급 대상 주택 중 최초 공급 시 지정한 성별에 따라 세대마다 남성과 여성의 성별이 지정되어 있는 주택이 있으며, 주택 별 준공년도 및 내·외부 환경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 계약기간 : 2년

-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 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최장 6년 거주) 합니다.

■ 재계약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 후 유형이 변경(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되어도 재계약이 가능하나 변경된 유형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재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년 단위로 7회 추가 연장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거주,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는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라 갱신)
- 다음 가~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계약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 나.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계약자가 다른 공급대상지역의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안내

- 1순위(감정평가액의 30%)와 2·3순위(감정평가액의 50%)의 임대조건을 차등 적용합니다.
- 청년은 기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적용하고, 대학생·취업준비생의 경우 임대보증금 100만원 (200만원)으로 별도 적용합니다.
- 상호전환(임대보증금↔월임대료)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전환 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 : 월임대료의 60%(신규공급 대상 주택의 경우 80%)까지 임대보증금 으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7% 입니다.
 - 낮출 월임대료 금액 × 12(개월) ÷ 6.7% = 추가되는 임대보증금 금액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 입니다. (별도 임대보증금 적용받는 대학생·취업준비생은 전환 불가)
 - 낮출 임대보증금 금액 × 2.5% ÷ 12(개월) = 추가되는 월임대료 금액

2 신청자격

▶ 공통사항

- 주택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30.) 현재 무주택자(본인)인 미혼(현재 혼인 상태가 아님)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으로서 신청순위 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1인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공공 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해당주택을 명도(퇴거)하는 조건으로 입주할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부모가 서울 소재 공공 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이 부모 세대에서 분리하는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신청 유형 중 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 해당하는 유형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 순위 별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하더라도, 신청 유형 관련 세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서류심사 시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판정되므로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 유형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에 재학(입주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 학기 복학 및 입학예정자 포함) 중인 자
②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졸업유예자 포함) 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③ 청년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 대학생 유형 관련 세부기준

인정 대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전공대학)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단,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기 타	※ 졸업유예자·대학원생은 대학생 유형 제외 (졸업유예자 및 대학원생은 요건 충족 시 취업 준생으로 지원 가능) □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복학 및 입학예정자 포함)만 대학생으로 신청 가능 □ 공고일 현재 최종 학기 재학 중인 경우 입주일과 무관하게 대학생으로 신청 (모든 학기를 이수한 졸업유예자, 수료자는 취업준비생으로 신청 가능) □ 복학예정자(입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및 각서를 제출하고 복학(입학) 후 즉시 재학증명서 제출(미제출 시 계약 취소 및 퇴거조치) □ 입학예정자의 경우 최종 합격자로서 자격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재학 중인 학교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취업준비생 유형 관련 세부기준

인정 대학교	□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의 원격대학, 기술대학) ※ 사내대학, 학점은행제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해외대학은 제외
인정 고등 ·고등기술학교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초·중등교육법」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제55조의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의 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 동등 학력 인정자(검정고시 등) ※ 중학교·해외고등학교는 제외
직장 재직 여부	□ 직장 재직 여부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유형을 기준으로 판단 (수급자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여 판단)하며 가입유형이 '직장가입자'가 아닐 것
기 타	□ 해당 공고의 경우 2019.07.01. 이후 졸업(수료) 및 중퇴자 지원 가능 □ 자격요건 충족 시 대학원 재학여부 무관 □ 졸업예정 증명서로 취업준비생 증빙 불가(모든 학기를 이수한 졸업유예자만 취업 준비생으로 신청 가능하므로 반드시 수료증명서 제출) □ 졸업(수료) 및 중퇴한 학교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청년 유형 관련 세부기준

나 이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만 나이 기준 (해당공고의 경우 1981.07.01.~2002.06.30. 출생자 지원 가능)
기 타	□ 직장 재직여부 무관 (순위 별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 가능

▶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자 격	상세 요건
	생계·의료·주 거급여 수급 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수급자 인정 가구원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부모
1순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 인정 가구원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부모
2순위	일반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496만원 이하)
3순위	일반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청년)의 자산 기준을 충족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신청자 본인이 세대원 보유 세대주일 경우 세대(세대 내 본인과 부모) 자산 기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일 경우 본인 자산 기준

▶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조회합니다.
-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기	준	1인가구(+20%)	2인가구(+10%)	3인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50%이하	2,094,142	2,737,521	3,120,260
가구당 월평균소득 (원)	100%이하	3,589,957	5,018,789	6,240,520

- 위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으로서 기준금액에 1인가구는 20% 가산, 2인가구는 10% 가산한 금액입니다.
-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1순위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인정 가구원 범위 및 2순위의 소득 기준 가구원 수 산정, 소득· 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표의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본인과 부모를 포함합니다. (3순위 단독세대주·세대원의 경우 1인가구 기준, 본인의 소득 및 자산 심사)
- 주택공급신청자의 부모를 제외한 형제·자매 및 기타 가구원은 가구원 수 산정 및 소득·자산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부모 이혼 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모 중 1명만 가구원에 포함, 소득 및 자산 심사 대상이 됩니다.
 - ①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②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모가 없다면 모집공고일 현재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혹은 신청자가 심사대상으로 선택)하는 부 또는 모

▶ 가점사항 및 입주자선정 우선순위

■ 가점사항

적 용 대상	가점 항목	내용	가점
	① 생계 · 의료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3
1 순위	②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
2, 3 순위	③ 소득기준 50% 이하	소득수준이 해당 순위 소득기준의 50% 이하인 경우	3
공통	④ 부모 무주택	신청자의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	2
공통	⑤ 타지역 출신	서울특별시 이외의 시 · 군 출신 (현재 신청자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기준)	2
공통	⑥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 · 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 : SH, LH 등의 공공임대주택 제외	1
공통	⑦ 장애인(본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본인)인 경우	2
 5 5	⑧ 장애인 가구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의 부모 중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이 있는 경우	1

■ 입주자선정 우선순위

-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 및 가점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순위 간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순위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사항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가점사항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 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사항 항목을 포함한 모든 조건이 동일한 신청자 간 경합이 있을 시에는 전산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3 모집절차

▶ 주택공개

공개기간	□ 2021.07.12.(월) - 2021.07.16.(금) [공개시간: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공개절차	□ 공개기간 중 관할센터에 유선 연락 하여 방문 희망 일시 및 방법을 협의 후 해당 주택을 방문해야 합니다. (개별 임의 방문 불가) □ 관할센터 연락처 : 「추가 안내」참고
유의사항	□ 주소지에 따라 내부 상태 및 주변 여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주택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나 동호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주택공개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인터넷 청약)

기간	ㅁ 2021.07.19.(월) 10:00 - 2021.07.23.(금) 17:00
방법	□ 인터넷 청약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sh.co.kr)에 접속 → 인터넷 청약 시스템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공고선택 → 단지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 가점사항입력 → 공동인증서 인증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유의사항	□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 금융기관(인터넷뱅킹) 및 6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 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인증서로 인증 가능합니다. □ 주소지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호실은 전산 추첨하여 무작위 배정됩니다. □ 청약접수 시 도로명 주소 사용을 권장합니다. □ 최초 입력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연락처 입력이나 연락처 변경 등의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 마감시간까지 신청 완료(저장)하여야 하며, 최종 확인 완료 시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마감 전 까지만 가능합니다.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 서류제출대상자에게 별도의 등기우편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으며 홈페이지 명단 게시 및 ARS 조회, 신청 접수 시 기입한 연락처로 문자(SMS)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일시	□ 2021.07.28.(수) 예정
방법	□ 문자(SMS) 전송 및 홈페이지(공지사항) 명단 게시 □ 홈페이지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 ARS 조회
선정 기준	 □ 신청순위 → 가점사항 총점이 높은 순으로 공급호수의 3배수를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3배수 내 신청순위 및 가점사항 총점이 같은 신청자가 있을 경우 해당 신청자는 별도의 추첨 없이 모두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기한	□ 발송: 2021.07.29.(목) - 2021.08.04.(수) 이내 소인 분 □ 도착: 2021.08.06.(금) 도착 분까지 제출 인정
방법	□ 등기우편 제출 (방문제출, 일반우편 제출 불가)
주소	□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담당자 앞
유의 사항	 □ 등기우편 외의 방법(일반우편 포함)으로 접수 불가하며, 제출 기간 이외소인 분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별도 안내 없이 탈락) □ 서류심사대상자의 서류제출이 없더라도 별도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 서류 제출자 중 제출서류가 미흡한 경우 신청 시 기입한 본인 연락처로 전화 1회, 문자 1회 발송 후 연락 불가 시 탈락 처리합니다. □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서류에 한해 사본 제출을 허용합니다. □ 제출서류와 신청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필요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심사 시결격 처리되므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해당서류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제출 및 오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 발급 불가 등의 사유로 신청접수기간 이후 순위 변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급담당부서 이외의 콜센터, 관할센터 등과의 상담 내용은 참고사항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선정 기준 방법 주소 유의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후 반납하지 않습니다. (탈락자 서류는 전형 종료 후 일괄 폐기)

공통 제출서류

□ 신청자 전원 제출

제출 서류		내용	발 급
	대학생	□ 재학생 :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 휴학생 : 휴학증명서 , 공시양식 각서 (재학증명서 미제출 시 퇴거 서약), 재학증명서 (복학 후 1개월 이내 관할 센터 제출) □ 입학예정자 :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공사양식 각서 (재학증명서 미제출 시 퇴거 서약), 재학증명서 (복학 후 1개월 이내 관할 센터 제출)	- 해당교육기관 - 붙임양식
자격 증명 취업 준비생 청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이력으로 발급) □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수급자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취업준비생 자격 확인 서류 ② 졸업자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⑤ 중퇴자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 졸업유예자 : 수료증, 수료증명서 ③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건강보험공단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해당교육기관
		□ 자격증명 관련 제출 서류 없음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 (정자체)서명 (서명 범위는 「소득 및 자산 기준 안내」 참고) - 부모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름 ② 본인과 부모 세대 분리 시: 분리된 부, 모 모두 서명 ⑤ 부모 이혼 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 또는 모 1인 서명 ①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자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②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자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없다면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혹은 신청자가 심사대상으로 선택)하는 부 또는 모 □ 반드시 모든 동의 란에 체크	- 붙임양식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자치센터
가족관계 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기준 발급)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자치센터

자격별 제출서류

□ 본인의 신청 자격(순위 및 가점)에 따른 서류 제출

해당 자격	제출서류 및 내용	발 급
(1순위)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에 한함	- 행정자치센터
(1순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자치센터
(1순위)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지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 확인 가능한 서류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에 한함 	- 행정자치센터
2, 3순위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 (정자체)서명 (서명 범위는 「소득 및 자산 기준 안내」참고) - 부모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름 ③ 부모 세대 분리 시: 분리된 부, 모 모두 포함 ⑤ 부모 이혼 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 또는 모 1인 서명 ①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자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②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자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없다면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혹은 신청자가 심사대상으로 선택)하는 부 또는 모 ※ 반드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란에 모두 서명	- 붙임양식
기타 가점사항 해당자	□ □ □ □ □ □ □ □ □ □ □ □ □ □ □ □ □ □ □	

[※] 가점사항 중 소득기준 50% 이하, 부모 무주택자 여부는 보건복지부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 (별도 제출 서류 없음)

추가 제출서류

□ 신청자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제출 서류	내 용 (해당자만 제출)	발 급
부 또는 모 혼인관계 증명서	□ 부모 이혼 시 소득 및 자산 심사 대상이 되는 부 또는 모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혼내역 표기) ※ 심사대상 부 또는 모 기준은 [신청자격] 참조	- 주민센터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사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모의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제출	- 주민센터

▶ 입주자격 부적격 소명

일 시	□ 2021.10월 중 [금융자산 조회 회신 시기에 따라 변경 가능]
방 법	□ 주택소유, 소득 및 자산 소명대상자 개별 통보 및 소명자료 등기우편 제출
유의사항	 □ 소득 및 자산 소명 절차는 관련 기준 충족을 요하는 대상(2~3순위)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 소명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및 안내문을 송부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및 자산 전산조회결과가 신청내역의 입주자격 기준을 초과한 신청자는 소명대상자로 선정되며, 전산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간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제출한 소명자료가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는 탈락처리 합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최종 입주자 발표

▶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 순위 → 가점사항 총점 → 가점사항 우선순위 → 추첨 □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를 기준으로 순위 간 경합이 있을 경우 상위 순위를 우선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사항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가점 사항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사항 항목을 포함한 모든 조건이 동일한 신청자 간 경합이 있을 시에는 전산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 선정	□ 서류심사, 소득 및 자산 심사의 적격자가 최종 입주자 선정 추첨의 대상이 되며, 신청자 본인이 신청한 주택 단위로 경쟁 및 입주자 선정이 이뤄집니다. □ 당첨자의 호실배정은 신청 주택 별 전산 무작위추첨에 따라 이뤄집니다.
	예비자 선정	□ 공급호수의 2배수 내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미계약·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 (예비자 자격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

▶ 최종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일 시	□ 2021.11.03.(수) 예정 [소득·자산 조회 회신 시기에 따라 변경 가능]
방 법	□ 홈페이지 공지사항 명단 게시 및 SMS(문자) 발송 □ 홈페이지 당첨자 조회 / ARS 조회 □ 당첨자 계약 안내 서류 및 계약금 고지서 등기우편 발송
유의사항	 □ 서류심사 대상자 전원에게 발표 사실을 문자(SMS) 안내하며, 최종 당첨자에게는 계약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전송할 예정입니다. □ 전산 무작위추첨에 따라 배정된 호실 이외(공실여부 관계없음)로 호실 변경 입주는 불가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입주부적격사유가 있을 시 추가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탈락 처리합니다.

5 계약 및 입주

▶ 2차 주택공개(최종 당첨자 대상)

공개기간	□ 2021.11.15.(월) - 2021.11.19.(금)
중세기단	[공개시간: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공개기간 중 관할센터에 유선 연락하여 방문 희망 일시 및 방법을 협의 후 해당
공개절차	주택을 방문해야 합니다. (개별 임의 방문 불가)
	□ 관할센터 연락처 : 「추가 안내」 참고
	□ 입주대상자에 한해 본인이 당첨된 주택만 확인 가능합니다 . (당첨 주택 외 타주택
유의사항	방문이나 입주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개 불가)
	ㅁ 주택공개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계 약

일 시	□ 2021.11.22.(월) - 2021.11.26.(금) [계약시간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부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계약체결	□ 계약 시 아래의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등기 발송된 고지서 상의 당첨자 전용 가상계좌로 계약금 납부 후 증빙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계약 시 공사에 계약금 납부 불가) □ 계약체결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계가족이 대리를 할 경우는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3자 (대리인)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계약진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계약자 본인 내방 시	① 계약자 신분증 ②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 ③ 계약금납부 영수증 및 계좌이체 확인증(인터넷 뱅킹) ④ 쾌적한 주거환경 이행 유지각서(공사 소정양식) ⑤ 서약서(무주택 및 당첨적격 확인 서약) ⑥ 주택사전점검표(서명 포함)			
	직계가족 또는 제3자(대리인) 내방 시	위의 본인 내방 시 구비서류 (①~⑥) 외	직계가족 대리 시	③ 대리인 신분증 ⑤ 계약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대리인) 대리 시	① 대리인의 신분증 ① 위임장(계약자의 인감 날인) 1통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상호전환	□ 계약은 보증금-임대료 전환 전의 계약서 상 금액으로만 가능 하며 보증금↔임대료 전환은 계약 완료 후 입주 전까지 관할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입 주

기 간	□ 2021.12.13.(월) - 2022.02.11.(금), 두 달간				
	□ 관할센터에 계약사실 통보 및 입주예정 주택 정비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입주기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수령한 잔금고지서 상의 계좌로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하며, 반드시 입주 2주(14일) 이전 해당지역 관할센터로 유선 연락하여 입주일자를 협의해야 합니다.				
안 내	□ 금융권 대출 관련 사항은 공사에서 관여하지 않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서 별도 대출을 시행하지 않으며 대출을 위한 계약서 내용(동호 및 면적) 수정은 불가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공급하는 임대주택이므로 기존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다른 대출금을 대출받은 경우 이를 상환하여야 입주가 가능(대출 여부를 조회하여 대출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입주 시 센터에 상환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6 추가안내

▶ 연락처

기 관	관할 자치구	전화번호		
<u> </u>	주 소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강남서초센터	강남구, 서초구	(02)2086-9800~1		
성 급시 <u>조</u> 앤니	강남구 선릉로 615 썬라이더빌딩 4층			
강서센터	강서구	(02)2657-8100~1		
· () 시앤니	강서구 마곡중앙1로 72 마곡엠밸리	나 10단지 M-Tower(오피스동) 2층		
고나나도 자네다.	관악구, 동작구	(02)828-5100~1		
관악동작센터 	동작구 상도로53길 70 성	당도SH빌 임대상가 101호		

기 관	관할 자치구	전화번호	
기 된	주 소		
ᅵ이드뷰세터	노원구, 도봉구	(02)3399-0000~1	
노원도봉센터	노원구 덕릉로 688 우리빌딩	딩(기업은행 상계역지점) 4층	
동대문광진중랑센터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02)490-1700~1	
중네군정산중당앤니	중랑구 봉화산로 165 선		
마포용산센터	마포구, 용산구	(02)380-0100~1	
리ㅗㅇ단판미	마포구 마포대로20 다보빌딩		
성동중구센터	성동구, 중구	(02)6909-9300~1	
	중구 다산로 21	0 흥진빌딩 8층	
성북강북센터	성북구, 강북구	(02)944-8000~1	
040412	강북구 도봉로 358 코스타타워(삼양신협본점) 11층		
송파센터	송파구	(02)3400-4700~1	
0 4 1 12 -1	송파구 충민로 10 가든파이브 툴관 9층 S19호		
가도 세디	강동구	(02)6946-3600~1	
강동센터	강동구 상일로 6길 51(상일동, 다올빌딩) 5층		
양천영등포센터	양천구, 영등포구	(02)2620-6700~1	
5선 5 <u>5</u> 포엔니	양천구 오목로 336 협성빌딩 B동 3층		
으펴 내대므조근세디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02)6910-9400~1	
은평서대문종로센터	은평구 진관3로 37 에코테라스 3층		
797400	구로구, 금천구	(02)6340-9000~1	
구로금천센터	구로구 오리로	1102-6, 3층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은 금융 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

구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신청자 본인 및 부모 서명
니니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소득 및 자산 출처(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	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	근로 소득	상시근로 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 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활근로 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 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 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 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재산 소득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지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 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총 자산		<u>.</u>	선박·항공 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기타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자산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 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 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	·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 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자료 출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 산정 방법

-	ᆸ	
구 분		총자산 기준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에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 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총 자 산	자동차	 자동차기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기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총자산기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 차기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기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함(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과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기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 ※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차가액 기준(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여야 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기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기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아래의 경우는 자동차가액 기준 산출에서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금 융 자 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구 -	분	총자산 기준
총 자 산	일 반 자 산	-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 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구 분	유 의 사 항
신 청	- 1인 1주택(실)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순위 등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 기한 내서류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접수 및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주소지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호실은 전산 무작위 추첨하여 배정합니다. - 다음 학기 복학 예정자 또는 입학 예정자의 자격으로 신청한 사람은 공사 양식 각서(미제출 시계약 취소 및퇴거 서약)및 재학증명서(복학 후 1개월 이내)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입학예정자의 경우 최종합격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입력한 주소 및 연락처로 등기우편과 SMS를 발송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연락처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에 따라 내부 상태 및 주변 여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주택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나 동호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청년 유형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100만원(200만원)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기준 임대보증금 및임대료만 적용가능합니다.

구 분	유 의 사 항	
신 청	- 본인이 기혼자 또는 재외국민인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부모님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도 소득과 자산 심사를 일반 신청자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무주택자 요건(본인)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준용합니다.	
서 류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더라도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다음 전형 진행이 가능하며, 서류미제출 탈락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심사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전형 종료 후 일괄 폐기 합니다.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서류에 한해 사본 제출을 허용합니다. 신청 전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서류 오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소 명	- 소득 및 자산 소명 절차는 관련 기준 충족을 요하는 전형에 한하여 진행되며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문을 송부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주택소유, 소득 및 자산 전산조회 결과가 신청내역과 다른 신청자는 소명대상자로 선정되며 전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간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제출한 소명자료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는 탈락처리됩니다.	
발 표	-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 발표일 이전에 결과를 알려드리지 않으며 모든 신청자의 전형 종료 후 (소명 절차 등) 일괄 발표 합니다 공급호수의 2배수 내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미계약·계약취소·계약 후 미입주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	
계 약	 최종 입주대상자라 하더라도 입주자격 관련 추가 소명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완료 하여야 계약체결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계약금을 납부하고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미계약취소 등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금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사본 제출이 필요하며, 입주지정 종료일 전까지 계약해지 신청하여야 공제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관할센터에서 신청가능)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최초 2년 계약 후 2회 갱신계약 가능(총 6년)하며 신청 유형이 변경 (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되어도 재계약이 가능하나 변경된 자격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갱신 계약해야 합니다. 	

구 분	유 의 사 항		
계 약	 단,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년 단위로 7회 추가 연장(총 20년)이 가능합니다.(임대보증금 및임대료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9조제3항 및제19조제4항에 따라 갱신) 임대차 기간 중에는 순위별 자격요건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본 공고의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적용되며,재계약 시점에 임대주택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임대보증금↔임대료 전환 전의 최초 금액으로 해야 하며,임대보증금↔임대료 전환은계약 이후(입주 전)관할센터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기본(할증)임대료의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임대보증금의 임대료 전환도가능합니다. 신규공급 대상 주택의 경우 전세형으로서 임대료의 8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임대주택으로주택도시기금에서 다른 대출금을 대출받은 경우 이를 상환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대출여부 조회하여 대상자에게 별도통보하며 상환 증빙서류 제출)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 주	-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자 본인만 입실 가능합니다 본인이 공공 임대주택(타 청년 매입임대주택 포함)의 기 당첨자인 경우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퇴거)하는 조건으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최종 입주자 발표 후 해당자 별도 통보 및 입주 전 센터 최종 확인) - 신청자의 부모가 서울 소재의 공공 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신청자가 기존 부모 세대에서 분리하는 조건으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 대출 관련 문의를 받지 않으며, 공사에서 별도 대출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위한 계약서 내용(동호표기 및 면적 등) 수정은 불가합니다.		
생 활	- 공동주택 특성 상 층간소음·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간합의에 의한 동호 교환 및 공실로의 동호이전 등은 불가합니다 공동생활 위해행위(남녀혼숙 등 사회적 문란행위, 향정신성 의약품 음용, 상습 음주 및 흡연, 고성방가 및 소음 발생 행위, 냄새 및 악취 발생원인 제공 행위, 동물을 키우는 행위, 도박, 친구나 친척 등의 잦은 방문으로 다른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초래, 타 입주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는 행위 등)로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지속할 시 갱신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가 발생하는 주택이 있으니 계약 전에 관할센터를 통해 관리비 발생여부를 반드시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기 설치된 세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으며 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구 분	유 의 사 항
커뮤니티실 공동체 활동	 일부 주택에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실 공간이 존재하여 향후 해당 공간을 활용한 공동체 활동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의 운영 및 공동체 공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의 비용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입주민은 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공동체 공간에 대한 공동생활 질서 유지 의무 (소음, 무단투기, 건물 내 흡연 등 금지)가 있습니다.
기 타	 이 주택은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으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치권을 양도·전대·알선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공급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등 관련 법령과 고시·지침에 따릅니다.

\$H 서울주택도시공사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www.i-sh.co.kr

콜센터 1600-3456



[MEMO



[MEMO



[MEMO

5H 서울주택도시공사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www.i-sh.co.kr

콜센터 1600-3456